

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7월 6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7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7월 21일

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 은 희

나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신설) 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3항)
- (신설) 체육시설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
- (신설)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3)
- (신설) 시설 사용의 공정성 확보 및 독점 방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)
- (신설)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사용 제한 및 위반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8조)
- (신설) 신동생활체육공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1, 별표 2)
- 용어, 문구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8조, 제12조, 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- 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덕 진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시설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개정된 이용시간과 별표 2의 조기·야간 시간 구분이 상이하
여 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관련
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신동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반면 구포생활
체육공원 축구장은 전용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유사 체육시설 간
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고 체육시설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
위해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수정이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